

2. 서울特別市社會福祉委員會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35分)

○議長 金瑛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社會福祉委員會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社會福祉委員會 韓相炫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相炫議員 尊敬하는 金瑛會議長님, 그리고 先後輩 同僚議員 여러분, 社會福祉委員會所屬 蘆原第2選舉區의 韓相炫議員입니다.

지난 1992年 9月 21日에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된 社會福祉委員會設置條例案이 第59回 臨時會 第1次 社會福祉委員會에 上程되어 質疑 答辯을 거쳐 이번 第62回 臨時會 第1次 社會福祉委員會에서 修正 議決되어 委員會를 代表하여 本議員이 審査報告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同 條例는 社會福祉事業法 第5條, 障礙人福祉法 第6條 및 生活保護法 第16條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에 委員會를 設置하여 社會福祉政策을 遂行하기 위하여 各界의 專門家의 意見을 收斂하도록 되어 있는 바, 同 條例의 필요성과 妥當性이 있다고 判斷되어 本委員會에서 深思熟考 끝에 修正議決되었습니다.

그 條例案의 主要骨子는 委員會는 障礙人福祉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障礙人福祉委員會와 生活保護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委員會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며,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한 30人 以內의 社會福祉, 障礙者福祉 및 生活保護 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同 事業을 行하는 法人의 代表者 등으로 構成토록 되어 있으며, 委員會는 每分期 定期委員會를 開催하며 臨時委員會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 召集토록 하여 委員會의 活動을 보장하고 委員會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分野別 小委員會를 構成 運營토록 함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本 委員會에서 修正된 主要事項은 다

음과 같습니다. 서울市長이 提出한 社會福祉委員會條例의 名稱이 우리 市議會의 社會福祉委員會와 똑같은,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社會福祉審議委員會로 修正을 하고 福祉政策을 다루는 家庭福祉局長도 포함시켜서 명실공히 積極的인 社會保障政策이 遂行되도록 하는 등 效率的인 委員會 運營과 能動的인 社會政策을 위한 基盤 마련에 最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同 條例案의 審査節次를 통하여 各界各層의 輿論收斂과 向後 社會福祉政策의 기틀을 造成하는 매우 중요한 條例임에 비추어 우리 委員會에서 深層審査 후 議決되었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나누어드린 油印物을 參考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尊敬하는 同僚議員님들의 깊은 理解와 協助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審査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瑛會 그러면 社會福祉委員會에서 審査 修正한 서울特別市社會福祉審議委員會設置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중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 “4.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한다.

안 제4조 제1항중 “부위원장 1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제2항에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을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

<p>지국장”으로 하고, 제3항 제1호, 제2호의 “장애인복지 및”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2항중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제6조 제2항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6조(회의)는 “제7조(회의)”로 하고 제6조 제2항의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위원의 임기)는 “제5조(위원의 임기)”로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의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안 제9조의 제4항중 “소위원회에 분야별”을 “분야별 소위원회에”로 수정한다.</p>	<p>적립, 관리와 사용 4.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 8 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p>
<p>.....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연구·조정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 사항 3. 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및 보호기금의</p>	<p>..... 제 4 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 7 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p>